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050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8월 11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II 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,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분석,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,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출연 사무명 : 서울연구원 출연

2.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가.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

제13조(운영재원)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

제4조(기금 및 출연금)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.

나. 추진 필요성

-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,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, 교통, 안전, 경제, 복지, 문화,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·전문적으로 조사·분석하고,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

3. 출연 사무내용

가.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·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

나.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

- 다.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
- 라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
- 마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·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
 용역, 원가계산 등의 수탁
- 바.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
- 사.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,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
- 아.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

4. 출연 기관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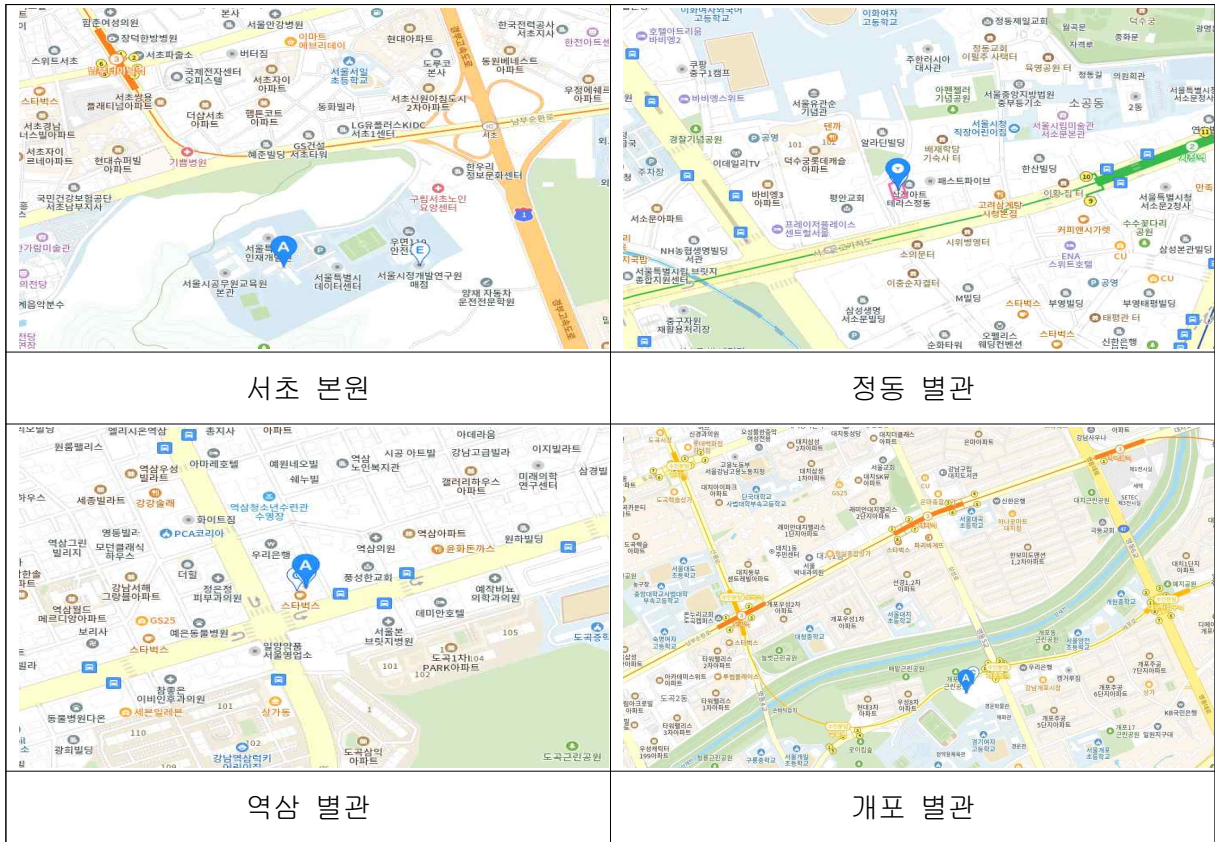
가. 연 혁

- ' 92. 1. 15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제정
- ' 92. 7. 1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
- ' 92. 10. 1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개원
- ' 03. 1. 27 현 청사(서초동 인재개발원 내) 이전
- ' 12. 7. 26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
- ' 17. 9. 21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
- ' 23. 11. 1 통합연구원 출범 * 서울연구원+서울기술연구원
- ' 24. 2. 23 제18대 오균 원장 취임

나. 소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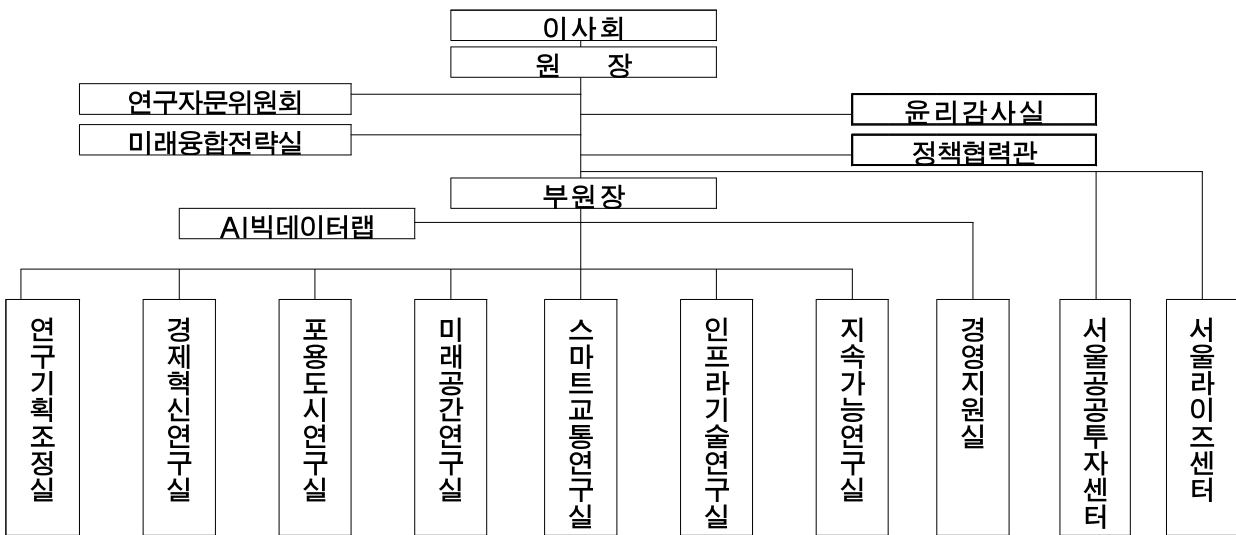
구 분	서초 본원	정동 별관	역삼 별관	개포 별관
소재지	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	중구 서소문로 89-10	강남구 도곡로 205, YK빌딩	강남구 개포로 416, 디지털혁신파크
규 모	지상5층 ~ 지하1층	지상4층 ~ 지하1층	지상8층 지하1층	지상1~3층
연면적	8,468m ²	1,794m ²	1,117m ²	499m ²
계약기간	'21.12.27. ~ '26.12.26.	'24.3.22. ~ '29.3.21.	'21.5.1. ~ '26.4.30.	'25.1.1. ~ '29.12.31.
소유자	서울시 (무상사용)	서울시 (무상사용)	민간	서울시 (무상사용)
비 고			공공투자관리센 터	서울RISE센터

다. 위치도



라. 규 모

- 조 직 : 원장, 부원장, 윤리감사실, 9실, 2센터, 1랩



- 인 력 : 정원 305명 / 현원 298명

(2025. 7. 31. 기준, 단위: 명)

구 분	계	임 원	연구직	일반직	공무직
정 원	305	1	217	71	16
현 원	298	1	211	70	16
과부족	△7	-	△6	△1	-

5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가. 출연금액(안) : 44,367백만원

나. 산출근거(안)

(단위 : 천원)

세입 예산			세출 예산		
계	56,746,222	100.0%	계	56,746,222	100.0%
1. 일반사업계정	49,146,222	86.6%	1. 일반사업계정	49,146,222	86.6%
가. 출연금	44,366,640	78.2%	가. 연구사업	7,384,060	13.0%
나. 자체수입	4,779,000	8.4%	1)연구과제 수행	7,289,450	12.8%
1)수탁사업계정 전입금	1,178,000	2.1%	2)연구실 운영	94,610	0.2%
2)출판물 등 판매수입	40,000	0.1%	나. 경영사업	8,029,506	14.1%
3)고유목적사업 준비금	600,000	1.1%	다. 인건비	33,411,448	58.9%
4)이월금	1,074,000	1.9%	라. 예비비	321,208	0.6%
5)내부유보금	1,887,000	3.3%			
2. 수탁·협약사업계정	7,600,000	13.4%	2. 수탁·협약사업계정	7,600,000	13.4%

Ⅳ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2026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.

2. 서울연구원의 현황

-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, 주요 시책 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·분석 및 정책 연구와 개발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됨.
- 이후 서울연구원은 유사·중복성 해소와 정책·기술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2018년 3월에 설립된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(2023.11.1.)하여 운영되고 있음.
- 현재 서울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은 동 동의안의 제출시점인 2025년 8월 기준으로 윤리감사실, 9실, 2센터, 1랩에 연구직 217명을 포함한 정규 인력 298명(현원)으로 구성됨.

< 서울연구원 인력 현황 >

(2025. 8월 기준, 단위 : 명)

구 분	계	원장	연구직				연구원	연구지원직			
			소계	선임 연구위원	연구 위원	부연구 위원		소계	일반직	전문직 ¹⁾	공무직
정 원	305	1	217	117			100	87	71	-	16
현 원	298	1	211	37	79	6	89	86	70	-	16
과부족	△7	-	△6	5			△11	△1	△1	-	-

※ 정원외직원 : 85명(초빙연구원 12명, 위촉연구원 68명, 연구보조원 5명)

-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은 1,399건이며, 올해는 8월을 기준으로 총 28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.

< 서울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²⁾ 현황 >

(2025. 8월 기준, 단위 : 건)

연도	계	출연금 수행연구(舊 자체연구)						협력연구	수탁연구
		소계	정 책	기 초	현 안	수 시	시 책		
총계	1,399	1,109	342	148	445	139	35	22	268
2025.8월	286	228	88	20	109	-	11	-	58
2024년	363	300	100	20	168	-	12	-	63
2023년	263	212	62	21	117	-	12	-	51
2022년	243	191	45	43	30	73	-	7	45
2021년	244	178	47	44	21	66	-	15	51

※ 연구과제 유형

▶ 출연금 수행연구(舊 자체연구)

- 정책 :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, 외부의 학계, 단체,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
- 기초 : 연구원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
- 현안 :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수시연구 및 서울시 현안검토 요청,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수시 검토 연구 등
- 시책 : 서울시의 지속적인 학술용역사업 중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

▶ 수탁연구 : 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

3. 서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절성 검토

- 서울시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³⁾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제1항⁴⁾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음.

1) 양 연구원 통합으로 전문직이 일반직에 통합되었음.

2) 2023년 연구수행 개편* : 자체연구(정책기초현안수사협력) → 출연금 수행연구(정책기초현안시책)

* 기존 현안연구+수시연구 ⇒ '현안연구'로 통합, 협력연구 ⇒ '정책연구'에 흡수

3) 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

4) 제4조(기금 및 출연금)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·운영·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- 서울연구원은 설립 이후 주요 시책과제의 개발, 각종 연구사업의 수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해 왔으며, 통합 이후에는 도시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 모색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 등 융복합 연구 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서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예산안 기준으로 2022년 260억원에서 2023년 316억원, 2024년 397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으로 증가한 서울연구원의 자체수입(내부유보금)을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306억 4천 2백만원으로 감소하였음.

< 연도별 서울연구원 출연금 >

(단위 : 백만원)

2022 예산안	2023 예산안	2024 예산안	2025 예산안	2026 동의안
26,057	31,600	39,734	30,642	44,367

- 그리고 동 동의안에서는 2026년도 출연금을 443억 6천 7백만원으로 제출하였으며, 이는 2025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액 308억 4천 2백만원보다 135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임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수입부문에서 2025년도 서울연구원 예산편성시 활용된 내부유보금 및 2024년도 결산액 감액 등에 따라 자체수입이 감소(92억 4천 1백만원)한 점과 지출부문에서 인건비가 증가(17억 9천만원)하고, 역삼별관 임대차 종료 및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증액과 정동청사 시설유지 전문인력 용역비 증액 등에 따라 경영사업비가 증가(12억 9천 1백만원)하며, 연구 수행비가 증가(9억 8천 1백만원)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증액사유로 제시하고 있음.
- 그러나 이러한 수입·지출에 대한 증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며,

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서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예산안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< 서울연구원 출연금의 동의안-예산안 간 편차 >

(단위 : 백만원)

2022			2023			2024			2025			2026
동의안	예산안	편차	동의안	예산안	편차	동의안	예산안	편차	동의안	예산안	편차	동의안
27,436	26,057	△1,379	43,155	31,600	△11,555	43,155	39,734	△3,421	39,172	30,642	△8,530	44,367

- 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 는 규정에 따라 출연 동의안이 서울시 예산안 편성 전에 제출되고 있기 때문임.
-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의 심의는 궁극적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출연 사업의 효과성, 출연 규모의 적정성, 법적 근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출연 규모에서 출연동의안과 예산안 간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출연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, 이는 결국 시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.
- 따라서 서울시는 동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범준	02-2180-8056